

전주지방법원 2015. 6. 24 선고 2015가단9211 판결 [토지인도 및 건물철거등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5. 6. 10.

판결 선고 2015. 6. 24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[별지 2] 목록 제1 기재 건물 90.89㎡ 전부를 철거하고, [별지 2] 목록 제2 기재 토지 329.7㎡ 전부를 인도하며,
나. 2014. 12. 26.부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 1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김성훈

별지